

제10회 전국기록인대회

---

# 라운드 테이블 II

(공개재분류, 누구의 몫인가)

---

2018. 10. 19.

한남대학교 56주년 기념관 서의필 홀  
(16:20 ~ 17:50)

사회 : 이철환(금융정보분석원)

토론 : 김은실(서울기록원), 노영종(국가기록원),  
박민영(충청남도 교육청), 최성렬(서울 중구청)

## 1.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곧 직면하게 될 현실

기록관 업무현장과 마찬가지로 현 제도하에서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재분류 또한 실행의 한계 및 부담과 직면하게 될 것임

### ■ 대량 이관기록물의 공개재분류 이행의 부담

- 서울기록원은 18년 12월 준공됨에 따라 6개월의 안정화 기간을 거쳐 6월부터 본격적인 이관기록물의 입수 및 정리절차가 진행될 예정
- 법 35조에 따르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이관된 비공개기록물의 5년주기 재분류와 생산된 지 30년경과 기록물의 공개전환을 위한 재분류 실시해야함
- 2020년까지 서울시 본청의 3개서고(청도, 본관, 서소문) 기록물 약 18만권이 이관될 예정
- 5년주기 재분류를 제외하더라도 당장 2019년 주 이관 대상인 청도서고의 기록물은 50% 이상이 30년 경과 기록물로 공개전환을 위한 재분류절차를 진행해야함

### ■ 이관기록물의 공개여부 관리상태의 신뢰성과 완결성

- 1인 기록관체계 인적, 물리적 한계 또는 기록관 미설치 등으로 다양한 관리상태의 기록물이 이관되어 오게 됨
  - (모든 기록관리절차가 진행된 경우) 처리과에서 공개 여부값을 지정한 생산시점 이후 정리 및 이관시점에서 2번 재분류와 기록관단위에서의 재분류(1번 이상)를 거친 기록물
  - 생산시점의 공개여부 값은 있으나 재분류 절차를 거치지 않은(또는 못한) 기록물
  - 공개정보가 없는 기록물(정보공개법 시행전 기록물 등)
- 대량의 기록물을 재분류하기 위해선 사업을 통한 재분류가 가장 현실적이지만 사업화의 실행과 지속성 담보가 어려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의 재분류는 국가기록원 재분류사업이 유일 (헌법기관 기록물관리기관인 국회기록보존소의 경우 공개여부분류 사업 추진)
  - 서울시와 서울교육청 기록관 단위에서 추진된 대단위 재분류사업도 실효성과 예산 등의 문제로 중단된 상태

## ■ 기록관단계의 재분류의 실효성과 기록물관리기관 공개관리 권한의 한계

- 영국기록물관리기관에서는 이관 시 기록의 생산맥락을 가장 잘 아는 기록관단위의 재분류가 필요함을 인정
- 그러나 현용 준현용 기록물을 관리하는 기록관 단계의 기록정보서비스 체계에서 과연 재분류가 필수적인지, 인력과 예산의 한계 속에서도 진행해야하는지 대한 현실적 고민
- 일반 외부이용자에겐 원문공개를 제외하고 실제적으로는 기록의 공개가 정보공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내부이용자의 업무 활용을 포함하여 재분류된 기록의 적극적 공개와 활용은 제한적이라 판단
- 또한 재분류 추진 과정에서 처리과 비공개연장의견의 불수용과 재분류 결과에 근거한 공개 등 기록관의 기록공개관리 권한을 강력하게 실행하지 못하고 있음
- 30년 경과기록물의 재분류 및 공개를 해야하는 국가기록원을 포함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도 35조 4항5항의 의해 생산기관의 비공개 연장 의견과 통일 외교 수사 안보 등 예외조항에 따라 권한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

## ■ 정보공개에 관한 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정보서비스

-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행정정보공개이며 기관의 업무와 존재이유에 대한 설명책임성을 장기 지속적으로 구현하는 아카이브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기록정보 공개와 서비스가 이루어져야함
- 그러나 현재 현용 준현용 기록의 공개관리 기준은 물론 보존기록의 열람기능까지 기록관이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나 기록정보서비스체계가 정보공개 제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2. 기록물 공개재분류 개정(안)의 한계

개인정보의 비공개 재분류 주기를 30년간 유예하는 것이  
재분류 업무가중과 형식적 운영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인가?

## ■ 가장 어렵고 가변적인 개인정보의 재분류 30년 유예

-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비공개 대상이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자의적 판단에 의한 비공개 설정이 가장 많은 대상중 하나이며 그 정보공개 대응 및 재분류시에도 가장 어렵고 가변적인 정보임

- 해당 정보의 프라이버시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이 되어야하지만 실제 모든 개인식별정보 자체가 비공개정보로 상당수 오분류 되고 있음
- 6호 다음으로 대상량이 많은 5호 진행 중 사안은 아카이브로 이관되는 10년 경과 시점은 대부분의 진행 중인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 좀 더 적극적으로는 수사 재판을 제외하고 기록관에 이관된 것 자체가 진행 중인 사안이 상당부분 종료될 가능성이 있으니 종료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유형별 재분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 즉 일괄적인 재분류 유예보다 대상량도 많고 어렵고 가변적이고 또 오분류 가능성이 큰 개인정보, 이관시 상당부분 종료되는 진행 중 사안 등 비공개 유형 특성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준과 절차 마련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하지 않을까라는 입장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기록물 비공개 관리 및 세부 열람기준 마련 시급

- 이제 두 곳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재분류 업무가 시작되고 헌법기관도 공개여부 설정이 아닌 실제적인 재분류를 추진될 예정
- 이에 적극적이고 원활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정보서비스를 위해 그간 부재했던 법 36조 보존기록물 비공개 상한기간 기준과 보다 세분화된 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 기준 마련이 필요함

### 3.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정보서비스와 공개재분류

서울기록원은 정보공개에서 벗어나려는 노력과 함께  
집중적인 기록정보서비스 체계 운영에 기반한 공개재분류를 실행해보고자 함

- 기록관단위 재분류 부담 최소화, 아카이브 단계에서의 집중적 재분류
  - 기록의 공개가 지금처럼 정보공개를 기반으로 운영된다면 민원처리, 행정지원업무로 계속 인식되며 업무영역도 축소될 것임
  - 이에 기록물관리기관, 특히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정보서비스는 최 대한 정보공개 체계와 분리되어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
  - 생산부서와 기록관은 재분류 부담을 최소화하는 대신 생산단위의 좀 더 면밀한 공개기준관리와 적용을 통한 생산기록물의 품질 유지 및 신속한 정보공개에 대응
  - 대신 처리과-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원활하고 정상적인 이관이행 기반을 마련한다는 전제하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통한 비공개기록물의 집중적인 재분류 추진을 검토하고 있음

■ 서울기록원의 공개재분류 단위와 시점 = 기록서비스 단위와 시점

- 서울기록원은 개관과 동시에 제38조의2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활용을 위한 정리·기술(記述)·편찬, 콘텐츠 구축 등 적극적 기록정보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
- 재분류도 이관기록물의 주기적이고 일괄적인 공개재분류가 아닌 카탈로그, 리서치가이드, 온·오프라인 콘텐츠 개발 등 아카이브의 서비스 다양한 도구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그 서비스 단위별로 해당 기록물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 공개재분류를 시행할 예정
- 그간의 30년 경과 재분류 및 5년주기 재분류 시 건별 검토 및 공개전환에 따른 생산기관 및 부서의 공개결정에 부담을 줄수 있는 구조였다고 판단
- 그러나 서비스 단위별 재분류하여 공개하는 방식은 특정 컬렉션, 리서치가이드 등과 연계하여 해당 기록물을 맥락과 내용분석을 기반으로 재분류하고 상세한 기술정보와 함께 공개함으로써 공개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기록의 공개 권한의 의지적 실천과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전문화 및 활성화

- 기록은 이관됨과 동시에 그 기록의 공개권한과 책임을 기록물관리기관이 가져와야하는 것이 당연하며, 그 권한을 의지적으로라도 강력히 실천하는 것 필요
- 또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적극적 기록공개와 서비스를 위해 (비공개대상 정보의 제한적 열람, 서비스단위를 기준으로 한 재분류 승인 등) 심의의 전문성과 절차적 안정성, 적극적인 기록공개 갈등관리 도구로써 기록물 공개심의회를 전문화하고 활성화하여 운영할 예정

## 1.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재분류 입법 취지

- 1) 2007년 기록관리법 전면개정 당시 국민의 알권리 및 국정운영의 감시 등을 위해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재분류 및 “30년 경과 시 공개원칙” 제도 도입
  - 외국에는 없는 우리나라 고유의 기록관리 제도임
- 2) 공개재분류는 기록물의 적극적 공개와 비공개 기록물의 철저한 보호를 위한 것으로, 기록물관리기관의 핵심업무임

## 2. 공개재분류 운영 상의 문제점

- 1) 기록관리 전문요원 1인이 다량의 비공개 기록물을 공개재분류하는 상황
  - 특히, 다량의 미정리된 비전자기록물이 서고에서 관리되어 공개재분류 대상량 또한 많아지게 되는 결과가 되었음
- 2) 공개재분류 후에도 여전히 비공개의 비율이 높은 상황
  - 특히, 개인정보 및 법령 비공개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은 공개 전환 가능성이 낮음
- 3) 공개재분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

## 3. 기록관에서의 공개재분류 업무의 의의 및 필요성

- 1) 기록관에서의 공개재분류는 기록정보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는 기초업무로, 향후 기록관의 주요한 전문영역의 업무로서 자리매김
  - ※ 기록서비스를 위한 필수업무로서 기록관 인력 증원의 논거 역할
- 2) 공개재분류는 법적·행정적 및 역사적 시각이 요구되는 전문적인 업무영역
- 3) 공개재분류와 원문공개 연계하여 기록관 역할 강화
  - 공개전환 기록물을 원문공개시스템에 제공, 기록관의 필요성 인식제고
- 4) 기록관에서는 최초 공개재분류 후 폐기 및 이관
  - 보존기간 1년, 3년, 5년 등의 한시기록물은 공개재분류 시점이 도래하기 이전에 폐기되기 때문에 5년주기 공개재분류 대상량이 아님
  - 보존기간 10년 기록물은 최초 공개재분류 후 생산 후 10년 경과 시 폐기되기 때문에 재재분류 대상이 아님
  -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은 최초 공개재분류 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기 때문에 재재분류 대상이 아님

※ 특히, 기관의견을 수렴하여 기록물 이관 전 최근 5년 내에 재분류한 경우에는 재분류 절차 없이 이관가능(법 제35조 제1항)

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은 주기적 재분류 필요(특히, 특수기록관)

### 3.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의 공개재분류 업무의 의의 및 필요성

- 1)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재분류는 비공개 기록물의 적극적 공개전환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는 한편, 기록정보 서비스의 토대를 마련하는 기본업무로서 의미가 있음
- 2) 국가기록원의 경우, 공개재분류 업무를 생산 후 30년 경과를 기준으로 생산후 30년경과 공개재분류/생산후 30년미경과 공개재분류로 구분
  - 생산 후 30년 미경과 공개재분류는 생산기관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고, 생산 후 30년 경과 공개재분류는 “생산 후 30년 경과 공개원칙”을 적용하여 적극적인 공개 추진
- 3)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생산 후 30년 경과 기록물의 비공개 기간 연장” 건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 필요
  - 국가기록원은 제1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07년)부터 매년 2~3회 안건을 상정하고 있음
    - ※ ‘07~’17년 79백만 건 공개재분류, 공개율 67.2%(전부공개 22%)
    - ※ 공개전환 기록물은 원문서비스 제공 : 2,020만 건(뷰잉횟수 86만 건)
- 4)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는 주기적 재분류(5년 주기/ 30년 주기)와 함께 주요 역사적 사건·주제 관련 기록물의 일괄 공개재분류 필요
  - 김창룡 저격사건, 진보당사건, 3.15부정선거, 필화사건, 4.19혁명 등 관련 기록물의 적극적 공개 및 책자 발간, 원문까지 온라인 서비스 실시

### 4. 기록관리법 등 제도상의 문제점

- 1) 생산 후 30년 경과 기록물의 공개절차를 정보공개법에 따르고 있음
  -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해서는 공개여부 결정절차, 기록물 열람·제공 방식 등을 기록관리법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 있음
- 2) 비공개 상한기간 미도입
  - 기록물 성격별 비공개 상한기간 도입 필요 / 사회적 합의 필요

## 5. 공개재분류 업무의 제도적 개선방향

### 1) 기록관

- 공개재분류 유예제도 도입 예정('18년 법률 개정)
- 최초 공개재분류에도 개인정보(전체의 70% 이상) 사유 비공개 기록물은 생산 후 30년까지 공개재분류 유예
  - ※ 향후 법령 비공개정보(1호) 기록물도 재분류 유예 검토
- 기록물 유형별 공개여부 기준 마련
  - 기준서는 공개재분류 업무의 편의, 효율성 및 공개 기준의 일관성을 위해 필요함
    - ※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기준」(정보공개책임관 협조) 및 국가기록원의 「공개재분류 기준서」, 판례·재결례, 언론 보도 등 참고

### 2) 영구기록물관리기관

- 개인정보(6호) 사유 비공개 기록물을 비공개 상한기간까지 재분류 유예
  - 국가기록원의 경우 “기록물 생산 후 30년 경과 공개원칙”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사유로 여전히 비공개(약 95.8%)되는 기록물은 비공개 상한기간까지 공개재분류를 유예
- 비공개 상한기간 단계적 도입(국방, 수사 등 → 개인정보) \*시행령 개정
  - ※ 개인정보의 비공개 상한기간 지정은 국민의 알권리 신장과 동시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 필요
- 생산 후 30년 경과 기록물의 열람 규정을 기록관리법에 신설
  - 기록물보존기관의 보존 기록물 중 생산 후 30년 미경과 기록물은 현행대로 정보공개법에 따름
  - 생산 후 30년 경과 기록물은 정보공개법이 아니라 기록관리법에 따른 기준과 절차 마련(학술연구 등)
    - ※ 생산후 30년경과 기록물의 열람·제공은 기록관리법에 별도 규정 신설
- 향후 이용자 계층별 공개재분류 업무 필요
  - ※ 현재는 기록관리법에 따라 일반 국민을 기준으로 한 공개여부 분류, 일반 국민/ 학술연구/ 이해당사자 등 이용자 계층별로 공개재분류 추진(공개 및 제공여부, 비공개 사유, 비공개 대상정보 등)

본인에 대한 반성부터 시작하게 하는 주제이다. ‘나는 이 업무를 얼마나 충실히 수행하였는가(수행해 왔는가)?’ 국가기록원 평가를 위해 수행했지 제대로 수행한 적은 없는 것 같다. 또 이 제도에 대해 무슨 말을 해 왔는가? 티 안나는데 대충 실적만 내면 되지, 하면 뭐해. 쓸 곳이 없는데..

내 스스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좁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이 토론을 준비하며 찾아본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 2005년 이원규<sup>1)</sup>는 기록은 보존하는 동안 성격과 가치가 변해가는데 (당시) 정보공개법과 기록물관리법 상의 (글을 쓸 당시)자료관과 특수자료관에서 기록물이 보존되는 동안 공개구분 변경에 대해 규정이 없는 것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주장하였다. 박지태<sup>2)</sup>는 ‘현행업무에 대한 정보공개와 준현용 또는 비현용의 상태로 전이된 기록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정보공개와는 다른 기준과 관리방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두 분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공개재분류가 기록관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업무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했다.

공개재분류와 관련하여 여러 이슈가 있지만 앞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주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 첫 번째, 티 안 나는데 대충 실적만 내면 되지

기록원 혁신 주제 중에도 ‘기록전문직의 윤리 및 전문성 강화’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의 전문성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폐기’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언급이 되었고 사용되었다. ‘폐기요원’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리고 기관에서 계신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록관리 전문요원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고 하면 ‘폐기’밖에 없을 것이다. 앞서 이원규 글에서처럼 기록관으로 이관되어 성격이 변하 기록물에 대한 공개권한을 기록관에 일임해 주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예로 정보공개가 들어왔을 때 기록관에서 보유하는 기록이라면 이미 시행된 공개재분류 결과로

1) 이원규, 「행정정보 및 보존기록물 공개의 운영과제」, 기록학연구(12), 2005, 113p.

2) 박지태, 「기록관리법령 따라읽기」, 2008, 13p.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후일 문제가 되었을 때 책임 소재 부분 등에 대해서는 기록관만의 책임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기록물공개심의회'도 필수 개최로 하고 처리과 담당자 배석 등을 요구할 필요도 있다.

## **두 번째, 하면 뭐해. 쓸 곳이 없는데...**

공개재분류와 관련된 연구에서 많이 제안하고 있는 것이 비공개세부기준 마련이다. 한해 공개재분류를 해서 만든 것보다 몇 해에 걸쳐 쌓은 데이터라면 더 충실한 기준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기록관에서도 편찬업무를 하여 재분류한 기록에 대한 자료를 내는 것이다. 현행 업무 중에는 비공개사항이라서 볼 수 없었지만, 준현용 단계에서라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개재분류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지만 이 토론문은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문을 쓰는 기분으로 작성하였다. 기록관의 일이 아니라고만 할 것이 아니고, 고쳐나가면서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것 맞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했다.

## 1. 현장의 문제점

###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인력 대비 공개재분류 업무 수행은 가능한 것인가?

- 기록물관리전문요원으로 다른 업무를 일체 배제하고 공개재분류 업무만 수행해도 불가능한 공개재분류 업무의 양적 문제가 있음. 또한 대량의 기록을 대상으로 공개재분류를 수행하더라도 비용 대비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문제점도 발생
- 공개재분류 업무의 양적 문제는 공개재분류 업무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대상 및 주기 조정 필요
-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인력 문제로 공개재분류 업무 수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공개재분류 업무 수행을 위한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인적 인프라 확보 방안에 대해 모색하여야 함
- 또한 기록물의 공개와 보호의 조화에 있어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전문성 및 기록관의 역할을 키워나가야만 기록물 폐기전문요원이라는 오명을 바뀔 수 있음
- 현재는 업무 수행 투입인력, 시간, 비용 대비 시민들의 체감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나, 향후 기록관리시스템의 원문공개 서비스가 시행된다면 공개재분류 업무에 대한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됨

### ■ 5년 주기의 공개재분류 업무는 적절한 것인가?

- 5년 주기 매번 같은 기록물을 같은 기준으로 재분류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
- 기록관 단계에서 공개재분류 업무는 원칙적으로 최초 1회만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며, 기록된 비공개 대상 정보가 시간의 경과나 활동의 종료 등에 의해 체감·해소될 수 있는 기록물로 판단되는 것만 선별하여 관리하고, 선별된 기록물은 5년마다 재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 기록물 공개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 현행 법령에 기록관 보존기록물에 대한 비공개 세부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비공개 세부기준을 기록물의 공개여부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기록건의 유형을 고려해야하는 기록물 공개재분류 특성상 무리가 있음

- 공개재분류 업무의 프로세스 중 기록물 유형별 공개재분류 기준서 역시 목적성과 활용성이 약함. 기록물 공개재분류 기준서는 처리과 의견조회 시 업무담당자들의 참고자료 또는 향후 공개재분류 업무 시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실제 처리과 의견조회 시 업무담당자는 기준서보다 더 직관적으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검토서를 참고하여 의견을 작성. 또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기록물로 제한된 기준서는 공개로 오분류 된 기록물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활용성 및 목적성이 떨어짐.
  - ※ 즉, 생산단계에서 오분류 된 기록물 많으면 많을수록 공개재분류 기준서의 의미 약해짐
- 표준(NAK/S 19-1:2012)에 근거하여 BRM 분류체계의 소기능 또는 단위과제별로 생산되는 기록물의 유형 파악이 필요하며, 단위과제-단위과제카드-기록물건의 유형
- 기록물건순으로 기록물 공개구분 기준서를 기록관단계에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함
  
- 기록물 공개구분 기준서는 결재문서 원문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기록물의 공개구분이 결정되는 생산단계부터 개입하여 기록물의 공개여부 오분류를 줄이고, 또한 비공개·부분공개 기록물의 공개재분류업무 수행 시에도 적극적으로 활용 될 수 있음

## 2. 기록관 단계에서의 공개재분류 업무 과연 필요한 것인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이관을 위해서라도 기록관 단계의 공개재분류 업무는 반드시 필요하다.

- 처리과 → 기록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체계적인 기록물 이관이 이루어진다면, 기록관에서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 이관 전 반드시 공개재분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기록관 단계에서 공개재분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생산자가 선택한 공개여부 값을 토대로 공개재분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즉, 생산자가 선택한 무분별한 기록물의 공개여부 값은 반드시 해당 기록물의 맥락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기록관 단계에서 정제된 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되어야 함.

■ 폐기에 국한된 기록관 단계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전문성 확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 현용, 준현용 단계에서의 기록물의 공개여부는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통해 실현하고, 비현용 단계에서의 기록물의 공개여부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정보서비스로 실현해야 한다면, 기록물의 공개제도에 있어 기록관의 역할은 없음.
- 공개재분류 제도는 기록물의 특성으로 인해 필요한 만큼 기밀성을 유지하면서도 기록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임.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되돌려주고자 하는 기록물관리전문가의 사명감을 생각해서라도 기록관 단계에서 공개재분류 업무는 반드시 필요함
-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은 기록물 원문이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는 현 시점에 기록물의 생산단계부터 이관단계, 재분류단계까지 체계적인 기록물의 공개구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러기 위해서 기록물의 공개와 보호의 조화와 관련하여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기록관 단계부터 적극적인 기록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함
- 1인 기록관 체제 탈피를 위해서라도 기록관의 역할,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전문성 확장이 필요함. 공개재분류 업무의 실효성을 부각하기보다 공개재분류 업무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고, 기록물 공개여부의 주체를 처리과 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한정하지 말고 기록관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음

### 3. 개선방안

####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인적 인프라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전체 정원의 4분의 1 이상을 기록물관리전문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는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을 삭제하고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기관별 기록물 연간 생산량 또는 조직의 규모 대비 전문요원의 배치인력을 산출하여 시행령에 규정
- 기록물 공개재분류 업무와 맞물려 있는 방대한 양의 기록물에 대해 평가, 폐기, 이관, 공개구분 기준서 작성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인적 인프라 확보는 반드시 필요함.

#### ■ 공공기록물법의 공개재분류 주기를 구체화 하자.

- 기록관 단계에서 공개재분류 업무는 이관 후 5년 1회만 수행하도록 주기 조정 필요. 단, 공개재분류 업무 수행 시 기록된 비공개 대상 정보가 시간의 경과나 활동의 종료 등에 의해 체감·해소될 수 있는 기록물로 판단되는 것만 선별하여 관리하고, 선별된 기록물은 5년마다 재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원활한 이관이 이루어지면 기록관 단계에서는 1회만 진행하게 되어 있음

#### ■ 생산단계부터 비공개 문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

- 생산단계에서 비공개 문서가 많이 생산될수록 공개재분류 대상은 증가함.
- 기록관 단계에서 단위과제-단위과제카드-기록물건의 유형-기록물건순으로 기록물 공개구분 기준서 작성 필요
- 작성된 기록물 공개구분 기준서는 기록물의 공개구분이 결정되는 생산 단계부터 개입하여 기록물의 공개여부 오분류를 줄이고, 또한 비공개·부분공개 기록물의 공개재분류업무 수행 시에도 적극적으로 활용 될 수 있음
- 생산단계에서 부적절한 공개 구분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실시

## 참고 1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분야	추진과제	현행	개정
기록정보 공개제도 개선	① 기록물 공개재분류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업무 가중 및 형식적 운영</li> <li>'5년주기 재분류' 시점 해석 모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신설)</b> 비공개대상정보 6호(개인정보의 경우) 최초 1회 공개여부 재분류 후, 5년 주기 재분류를 30년간 유예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35조제2항 단서)</li> <li><b>(명확화)</b> '재분류 연도부터'(現) → '재분류 시행 다음 연도부터'(개정) (제35조제2항)</li> </ul>

## 4. 기록정보 공개제도 개선

### ① 기록물 공개재분류 제도 개선

#### □ 현황 및 문제점

- 각급 기관의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업무 가중 및 형식적 운영으로 실효성 미흡
  - 재분류 가능성이 낮은 개인정보(제6호) 비공개는 재분류의 실익이 없으나, 동일하게 재분류 실시
- '5년주기 재분류' 시점이 재분류된 연도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로는 4년마다 재분류 시점이 도래
  - ※ 2018년 재분류 → (재분류연도 포함 5년경과) → 2022년 재분류 : 실제로 4년을 주기로 재분류하는 결과 → 재분류 시행 이후 5년 경과로 수정필요

#### □ 개선방안

- '개인정보(6호)' 비공개 기록물에 대해서는 최초 1회 공개여부를 재분류한 이후 5년 주기 재분류를 30년간 유예토록 규정
  - ※ 30년 유예 : 생산 후 30년 경과 공개 원칙 적용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비공개대상정보)

▶(제6호) 해당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5년 주기 재분류를 실시한 다음연도부터 매5년마다 공개여부 재분류를 실시하도록 규정 정비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기록물법)

[시행 2017. 9. 22] [법률 제14613호, 2017. 3. 21, 일부개정]

## 제5장 기록물의 관리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①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록물을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로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③ 기록관이나 특수기록관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으로 분류된 기록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④ 특수기록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30년이 지난 후에도 업무수행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시기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가정보원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생산연도 종료 후 5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것이 예상되는 정보 업무 관련 기록물의 이관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공공기관은 기록물의 원활한 수집 및 이관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기록물의 생산현황을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에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그 생산현황을 취합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⑦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기록물의 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의 소관 기록물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3. 21.]

## 제8장 기록물의 공개·열람 및 활용 &lt;개정 2010. 2. 4.&gt;

**제35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① 공공기관은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영구 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기록물을 이관하기 전 최근 5년의 기간 중 해당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재분류한 경우에는 공개 여부 재분류 절차를 생략하고 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② 기록물관리기관은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재분류된 연도부터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③ 비공개 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지나면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9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이관시기가 30년 이상으로 연장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 생산기관으로부터 기록물 비공개 기간의 연장 요청을 받으면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8조에 따른 기록물공개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 해당 기록물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비공개 유형별 현황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고, 재분류된 연도부터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⑤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공개하려면 미리 그 기록물을

생산한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3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비공개 상한기간 지정)**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성격별로 비공개 상한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37조(비공개 기록물의 열람)**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비공개 기록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람 청구를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적으로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본인(상속인을 포함한다)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열람을 청구한 경우
2. 개인이나 단체가 권리구제 등을 위하여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공기관에서 직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이나 단체가 학술연구 등 비영리 목적으로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공개 기록물을 열람한 자는 그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열람신청서에 적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38조(기록물공개심의회)**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4항에 따른 비공개 기간 연장 요청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기록물 공개 여부와 관련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 ② 기록물공개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기록물공개심의회는 위원 중 소속 공무원 및 기록물의 공개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기록물공개심의회는 회의록 작성·보존에 관하여는 제15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3. 21.>

[전문개정 2012. 3. 21.]

**제38조의2(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활용)**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물을 정리(整理)·기술(記述)·편찬하고, 콘텐츠를 구축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2. 4.]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

[시행 2018. 1. 1] [대통령령 제27460호, 2016. 8. 29, 일부개정]

## 제5장 기록물의 관리

### 제1절 기록물 관리기준

**제27조(공개여부의 구분관리)** 기록물은 건 단위로 공개여부를 구분하고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 등록 정보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접근권한 관리)**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생산·접수, 보존 기록물의 무결성 보장 및 비공개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접근범위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접근권한은 기록물 및 접근자를 기준으로 기록물 내용 및 목록정보로 구분하여 접근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및 영구기록관리시스템에서 생산·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한 접근·접근시도에 관한 사항, 이력정보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근이력, 처리상황 등의 관리정보는 해당 시스템으로 자동 생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임의로 수정·삭제할 수 없어야 한다.

### 제3절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관리

**제41조(특수기록관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①법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특수기록관의 장이 소관 비공개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관연장기간, 사유 등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특수기록관에서 보존중인 비공개 기록물이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공개기록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대상목록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기록물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짜에 이관하여야 한다.

③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특수기록관의 장이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30년 경과 후에 이관시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관예정연도 6개월 전까지 대상기록물, 연장시기 및 구체적 연장 사유를 기재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시기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보업무 관련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따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 기록물, 사유 및 이관시기 등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4절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 <개정 2010. 5. 4.>

**제45조(특수기록관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협의 및 이관)** ①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4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특수기록관으로부터 이관시기 연장을 요청받았거나 이관시기를 협의하는 경우에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관시기 연장 여부 및 이관시기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특수기록관 소관 비공개기록물 중 제1항에 따른 이관시기 경과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공개 재분류 등 이관 사유가 발생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이관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장 기록물의 공개·열람 및 활용 <개정 2010. 5. 4.>

**제72조(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①공공기관이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 관할 기록

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의 건단위 또는 쪽단위로 공개여부를 구분하고, 비공개 기록물의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29.>

②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소장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비공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공공기관의 장은 연장시기 및 사유 등을 해당 비공개기록물의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30년이 지난 해의 전년도 말까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공개여부 의견조회시 해당 공공기관이 비공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에 비공개 사유 및 공개가능 시기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공개 청구에 의하여 생산기관의 의견을 조회하는 때에는 그 생산기관은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된 기록물은 해당 기록물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당 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29.>

**제73조(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절차)**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비공개 기록물 열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소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열람 청구 대상 기록물, 청구 목적
3. 열람신청서에 기재한 목적 내 사용에 대한 동의

②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청구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제한적 열람 가능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기관 의견조회, 법 제38조에 따른 기록물공개심의회(이하 "기록물공개심의회"라 한다) 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 열람 결정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신청인은 7일 이내에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7일 이내에 기록물공개심의회에서 재결정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열람신청서 및 재심의 요청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74조(기록물공개심의회 구성)** ①기록물공개심의회 위원 중 4인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3인은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위원장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기록물공개심의회 회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공개심의회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그 밖에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록물공개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4조의2(보존기록물의 온라인 검색·열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을 공공기관이 직접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9. 19.]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시행 2017.9.22.] [행정안전부령 제11호, 2017.9.22., 일부개정]

### 제4장 기록물관리

**제18조(기록물 공개여부 구분표시)** ①영 제27조에 따른 기록물의 공개여부 구분표시는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 중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부분공개( )" 또는 "비공개( )"로 표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번호중 해당 번호를 괄호 안에 표시하여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